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변경 시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단체	명칭	연락처
	소재지(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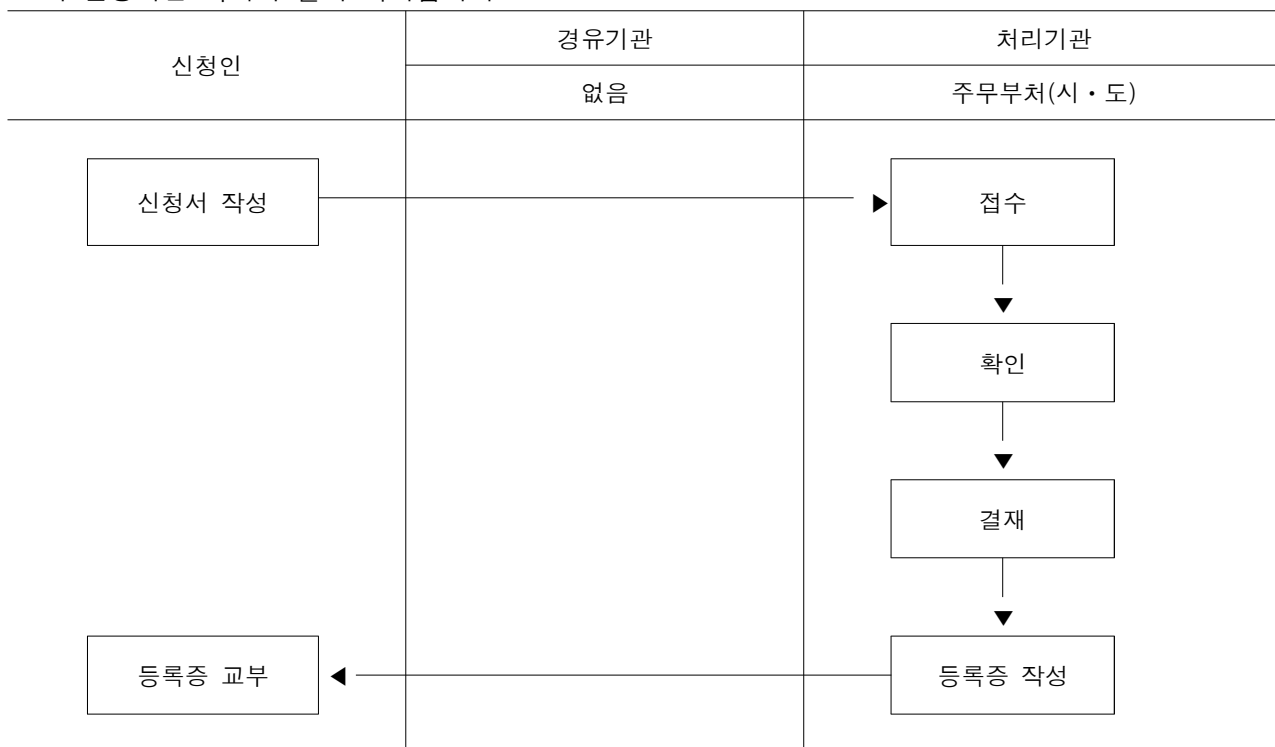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p><등록 신청 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회칙 1부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p><등록변경 신청 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대표자·관리인 또는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규 등록시 구비 서류 >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에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중 회원명부만 제출토록한 것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미 검증된 사항은 제외하고 필요 최소한의 민원서류를 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타기관 법인일 경우는 법인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법인설립주무관청에 의견조회 등을 통해 등록요건의 적합여부 판단

< 변경 등록시 구비서류 >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 공통 구비서류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 회칙(또는 정관), 총회회의록, 단체등록증 원본 구비

※ 변경사유별 추가구비서류

- 대표자변경 :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주된 사무소 소재지변경 :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무실임차계약서 등)
- 주된 사업 : 사업계획서, 예산서

< 서식 1 >

회 원 명 부

< 서식 2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등 록 단 체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주 된 사 업	◦ ◦ ◦			
분 실 (훼손) 사 항	분실(훼손)일자			
	분실(훼손)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